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노4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모욕),모욕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파 결

사건 2019노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 된 죄명 모욕), 모

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수(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정219 판결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게시한 글의 내용, 그 표현방법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 전 공소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26.자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데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8: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메신저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B아파트 동대표들과 위 아파트관리소장이 이용하는 D 단체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E동 대표는 가히 사고가 악마에 가깝네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5,7,8,9,10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해당 D 채팅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 10:10경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해당 D 채팅방에 피해자와 I가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6쪽).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위 메시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J동 대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mathbf{E} 동 대표로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I는 이 사건 아파트의 K동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T는 피해자의 측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쪽).
- 3) I는 2017. 3. 14. 피고인만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피해자를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였고, I본인은 위 회의의 감사로 선출되었다(증거기록 제152, 153쪽). 한편 노원구청은 위 2017. 3. 14.자 회의가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 4) I는 2017. 5. 26.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격화되자 "회 장님, 가시죠!"라고 말하였는데, 위 '회장님'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I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가까우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 5) 피고인이 2017. 5. 25. 20:02경 단체 D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산은 산이요 악마는 악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앞으로 K동 대표님의 역할 기대/ 부탁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I는 "주위분들을 중재하고 리드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대화방을 나가기도 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2 부분

이 부분 메시지 내용은 각각 "산은 산이요 악마는 악마다", "E동 대표는 가히 사고가 악마에 가깝네요"라는 것이다. 그런데 1 피고인이 위 단어를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나, '악마'라는 단어가 가지는 비난의 강도나 그 일반 용례(위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노원구청이 그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묵살하면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려 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처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점, 4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동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공직자이면서 입주자 대표를 맡은 점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직장에도 그리한 내용을 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위각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각 메시지가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